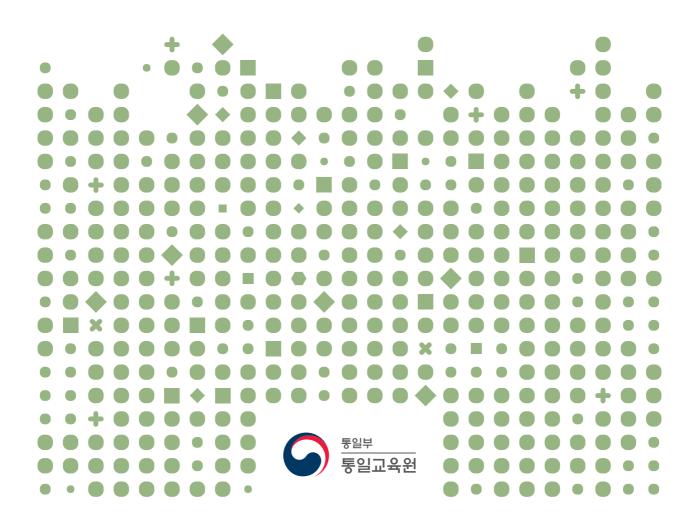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2019.3.



목 차

l.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1
1. 수립 배경 ···································
. 현황 ······ 5
1. 2018년 평화·통일교육 현황 ···································
Ⅲ. 목표 및 추진 방향
1. 교육 목표 18 2. 추진 방향 22 3. 협업 체계 구축 25 4. 평화·통일교육 정책과제 목록 26
Ⅳ. 정책과제 29
1. 학교 교육의 플랫폼 활성화312. 사회 교육의 체계적 확장373. 전문인력 양성의 내실화434. 국민 참여와 통일공감대 확산475. 뉴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506. 체험공간의 특성화577.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60
V. 협조·요청사항 65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67 2. 통일교육주간 참여 69 3.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기관 평화·통일교육 강화 70
VI. 부록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prod

Ш

IV

V

VI

Ⅰ.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 수립 배경

- o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의 제정('99.2월)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본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법 제6조), '18.9월 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법 제6조 2항)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 2항(통일교육기본계획 포함 사항) >

-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o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계획을 포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일교육 계획을 제시
 - 법은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법 제5조 제3항)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의 협조 요청을 규정 (시행령 제3조의2)

2 추진 경과

- o 통일부는 법에 따라 2000년도부터 연 단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배포하여 통일교육의 계획을 공유 ※ 미발간 연도 : '02년, '04년, '07년, '15년
- o 2019년부터 기본계획의 체계와 구성을 개편
 -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 세부계획은 연 단위 통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신설)에 반영
 - ※ 2019년은 3개년 기본계획과 2019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 각 기관 교육 일정을 취합하는 구성을 개편하여, 범정부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7개 정책과제 33개 세부추진과제별로 종합·정리
 - ※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계획 포함 사항도 정책과제에 반영

구분	종전		개편
체계	기본계획(매년)	\Rightarrow	기본계획(3년), 시행계획(매년) 기본계획 수립연도(3년마다)에는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구성	기관별		정책과제별
비고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2항 개정 반영

- o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수립 경과
 - '18.12.19. (통일부 → 관계기관) 작성 지침 통보 및 작성 요청
 - '19.1.17. (관계기관 → 통일부) 각 기관 계획 제출
 - '19.2.11주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19.3.5. (통일부 → 관계기관) 기본계획 통보



현 황

1 2018년 평화·통일교육 현황(통일부)

①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및 외연 확대

- o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기존 『통일교육지침서』) 개편·발간
 - 1여 년 동안 각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 7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15개항 도출
- o 「통일교육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평화·통일교육 기본방향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교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제도화
- o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및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 공공부문 3,400여 개 기관 대상 통일교육 의무화, 통일교육주간 법제화 등 평화통일의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o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추진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 외국인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및 해외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② 통일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o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 운영
 - 각계 최고경영자, 여론 주도층, 공무원,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을 대상으로 6개 과정 운영(약 6,000명 수료)
- o 국내외 차세대 전문가 양성 강화에 주력
 - 통일·북한학 전공 대학생 특별과정 최초 개설, 18개국 신진학자, 재외동포 2세 등을 초빙하여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진행

 \prod

Ι

 \prod

IV

V

③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o 초·중·고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 확산
 -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 및 연구용역 실시
- o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초·중·고 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
 - 체험교육경비지원(100개교), 통일리더캠프(37회), 연구학교 운영(40개교), 어린이 기자단(250명), 통일문화 경연대회 등 지원
 - ※ 통일교육주간 전국 초·중·고 계기수업 참여율: 95%
- o 대학 평화·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교육 기회 확대
 - 6개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의 보급·확산 및 특강·강좌 개설 지원 대학 확대(57개교)

④ 지역사회 민주시민의식 함양

- o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 운영
 - 통일교육위원(811명) 및 지역센터(18개, 1,765회 행사 추진, 25만여 명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추진
- o 전국의 통일관(12개)을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개발
 - 기획전시·공연 등을 접목한 문화공간으로서 개선, 총 120만 명 관람

⑤ 사이버강의 및 교재 개발

- o 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강의 콘텐츠 제공
 - '18년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평화·통일교육 및 방북교육 수강
 - ※ 사이버강의 수강인원 : '13년 11,977명 → '17년 54,285명 → '18년 108,000명
- o 평화·통일교육 교재 다종화
 -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도서자료, 특집 프로그램 등 개발, 특히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자료 개발

2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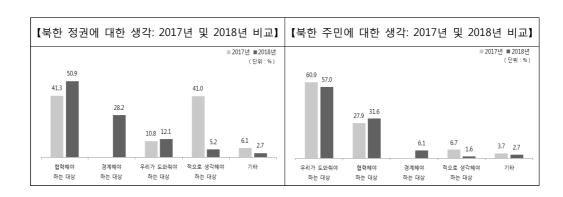
① 조사 개요

- o 통일부는 교육부·교육청의 협조 하에 매년 초·중·고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초·중·고 597개교 학생·교사 87,113명)으로 통일교육 실태조사실시(법 제6조의2)
 - ※ △초(5, 6학년)·중·고등학생 82,947명 △교사(초등 담임교사, 중·고등학교 담당교사)4,166명
 - ※ 연구학교(학생 9.717명) 별도조사

2 조사 결과

[학생]

o 초·중·고 학생들의 대북인식은 '17년과 비교시 '적·경계'보다는 '협력· 지원'의 대상이라는 인식 증가



- o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학교 통일교육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이유를 드는 답변이 증가하고,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17년에 비해 가까운 미래로 기대

Ι

 \prod

 \coprod

IV

V



[학교통일교육 후 통일 관심도 변화: 2017년 및 2018년 비교]

#2017년 및 2018년 비교]

#2017년 #2018년 (단위:%)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9.7 \$2.2

#40.2 #4.3 #4.4 #4.2 #4.7

#40.2 #4.4 #4.2 #4.7

#40.2 #4.4 #4.2 #4.7

#40.2 #4.4 #4.2 #4.7

#40.2 #4.4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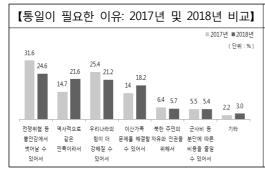
#40.2 #4.2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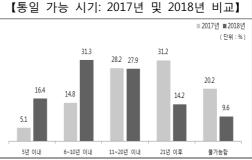
#40.2 #4.2 #4.7

#40.2 #4.2 #4.7

#40.2 #4.2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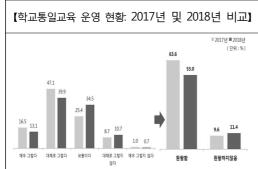
#40.2 #4.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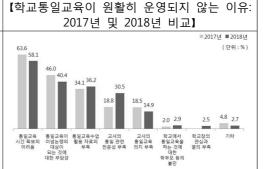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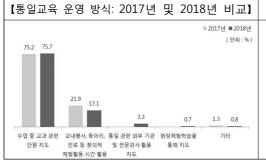


【교사】

- o 교사들은 통일교육 운영현황 평가에 대해 과반수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년도보다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
 - 학교통일교육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시간 확보의 어려움', '이념논쟁의 부담', '교육자료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
- o 학교통일교육 운영 방식은 '17년과 동일하게 교과 관련 단원지도 (75.7%)가 가장 높은 비율
 - ※ 행사. 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은 17.1%로 '17년과 비교시 4.8% 감소
- o 교육 자료 준비는 정부 제공 자료, 지도서의 비중은 감소하고 유튜브, 포털사이트(신규 항목) 이용이 66.3%로 가장 높은 응답









③ **평가**

- o 남북관계 개선과 균형 있는 북한관 교육 등을 통해 북한을 적이기 보다는 협력·지원의 대상이라는 인식 증가
 - '전쟁 위협 감소'와 '민족 의식 회복'이 학생들의 '통일 필요' 인식 견인
- o 학생들의 통일교육 후 통일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통일교육의 효과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
- o 다만, 전년도보다 학교통일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적 평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데 따라 학교통일 교육의 기대수준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로 보임.
- ⇒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료 및 프로그램 부족,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보완 필요

Ι

П

 \mathbf{III}

IV

V

3 │ 기존 평화·통일교육 성과 및 보완점

□ 성과

- o 남북 평화공존·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설정
 - 종전 분단시대 통일교육에서 평화시대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립
 - 『통일교육지침서』를 개편하여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중점 사항을 제시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o 안보 또는 평화 편중 논란 등 통일교육의 편향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노력
 -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균형성 제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 중시
- o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장 소통 증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 교사, 시민단체, 국회 등 평화·통일교육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교육 민관협의회」 구성
 -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향 등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소통 추진
- o 초·중·고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 확대 기반 마련
 -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 개선 방안 연구, 교수·학습 참고자료 발간(교육부) 등 실시
 - 통일교육주간 법정화로 통일교육주간 계기수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o 대학 평화·통일교육 기반 확충
 - 「통일교육 선도대학」 3년차 사업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모델 확산 및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참여 대학 확대*
 - ※ '17년 47개 → '18년 57개

□ 보완사항

- o 향후 환경 변화 등에 부응할 수 있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추진과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필요
 -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 평화감수성 및 민주주의, 다원주의, 관용 가치 함양 등에 기여하는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보급
- o 평화·통일교육 공급자 확대에 따라 기관 간 협력 관계 설정은 중요한 과제
 - 정부(통일부·교육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시민사회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모색 필요

 \prod

Ι

 \prod

IV

V



목표 및 추진 방향

Ⅲ. 목표 및 추진 방향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양성 비 전 ■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목 표 ■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 평화의식 함양 ■ 민주시민의식 고양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추진 방향 ■ 미래세대 통일공감대 형성 ■ 국제사회 통일환경 구축 ■ 평화·통일교육 통합 네트워크 구축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 학교 교육 기반 강화 학교 교육의 ㅇ 학생 인식 제고 플랫폼 활성화 ○ 대학 교육 기반 조성 ㅇ 공공부문 사회 교육의 ○ 지역사회 ○ 2030세대 체계적 확장 ○ 부문별 전문인력 ㅇ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양성의 내실화 국민 참여와 ○ 참여형 문화행사 ○ 온라인 홍보 통일공감대 확산 ㅇ 콘텐츠 개발 뉴미디어 및 ㅇ 이러닝 개발 콘텐츠 개발 ○ 실태조사 및 연구 체험공간의 ○ 통일관 ㅇ 체험연수 시설 특성화 글로벌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교육 추진 협력 체계 구축

정부

- 평화·통일교육 방향 정립
- 학교 및 지역, 사회 각 분야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

교육훈련기관

-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단위학교 및 지역사회

- 평화·통일교육 실시
- 통일공감대 확산

Ι

П

 \prod

IV

V

1 📗 교육 목표

① 평화·통일교육 개념

- o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등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 으로 추진
 -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 ※「교육기본법」도 학생 및 교원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과 연수를 규정(제17조의6)
- o 평화, 다양성, 관용 등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통일교육의 외연 확대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대화와 타협·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평화역량을 키움으로써 평화감수성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 강조

< 평화·통일교육 취지 및 의의 >

- · 남북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평화·통일교육 요구
- · 통일의 필요성을 주입하는 지식 전달 중심에서 행동 주체로서 학습자가 성장하는 시민 역량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요구
- · 북한의 현실을 균형 있게 이해하며,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상대로 인식하는 노력 필요
- · 분야별 남북교류 활성화 및 동북아 평화 공간 구축 준비로서 평화·통일교육 요구
- o 통일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
-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중심에 있는 핵심가치가 평화임. 나의 일상의 평화가 곧 한반도의 평화이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로 연결된다는 인식 에서 출발
- 생명·인권·생태·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으며, 이는 통일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시민 역량으로 확대
- o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을 지향
-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여 남북통합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대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해 가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지향
- 평화감수성 함양을 통해 다양성을 향유하는 소양과 민주적인 소통,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② 정책 환경의 변화

- o 남북관계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관리의 중요성 증대
 -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복원 및 분야별 협력 추진 등의 변화가 예견되면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필요
- o 평화·통일교육의 다양한 수요 확대
 - 남북 간 평화로운 공존 필요성이 여러 분야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 다양한 콘텐츠 및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 o 평화·통일교육 주체의 다변화 및 협업 필요성 증대
 - 평화·통일교육의 수요 확대에 따라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시민 단체 등은 자체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추진
 - 평화·통일교육 민·관 주체 간 프로그램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 등 협업 필요

③ **평화·통일교육 목표**(『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인용)

- o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임을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 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 o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 군사적 위협과 여러 위험요소들로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지켜나가는 안보의식 강화
- o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북한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배양
- o 평화의식 함양
 -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관용의 정신, 평화의식 제고
- o 민주시민의식 고양
 - 자유·민주·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국가 구상을 위해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통합적으로 교육

Ι

 \prod

Ш

IV

V

4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15개항(『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인용)

- 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 통일은 분단의 극복이자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
- ②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 전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차워의 문제
- ③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 병행 필요
- ④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 통일의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적극적이고 항구 적인 평화의 정착 필요
- ⑤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다.
 - 강한 안보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토대
- ⑥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 북한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토대 마련 필요
- ⑦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 북한과 관련된 사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북한 체제·사회 제반 현상의 본질적 요인에 대한 판단이 중요

- ⑧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연결고리를 활용하여 민족 동질성을 키워나가는 실천적 자세를 가질 필요
- ⑨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 남북은 민족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 ⑩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화해협력, 신뢰 증진 등 남북 가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할 필요
- 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남북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필요
- ①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복지 등 자유민주적 가치가 보장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열린 사회를 추구하는 통일 국가 지향
- ③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의 선순환은 아시아와 세계에도 기여
- 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화해협력 → 상호 신뢰 →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 정치적 통합 등 단계적 접근 중요
- ⑤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과정에서 여러 시각의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토론에 기초하여 다양한 견해를 존중

П

 \prod

IV

 \mathbb{V}

2 추진 방향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

- o 통일·북한 관련 다양한 견해들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통일교육 추진
 - 평화, 통일, 민주주의 등 평화·통일교육 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방식 및 과정과 관련된 합의 사항 마련
- o 교육 공급자 간 협력 구축을 통한 국민 공감의 평화·통일교육 실시
 - 다양한 교육기관 등과 협력적 관계 구축 및 교육 방향, 내용 등에 대한 합의 모색 통해 일관성 있는 평화·통일교육 추진
- o 사회적 대화 과정을 통한 통일문제 공감대 확산
 - 통일교육주간(5월) 등을 통해 학교·지역사회·부문별로 다양한 평화· 통일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

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 o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부응하는 평화·통일교육 추진
 -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고 민주시민덕성을 함양하는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 지향
 - 평화·경제·국제 등의 영역 간 연계교육을 실시하여 한반도 공존번영에 대한 종합적 관점 제시
- o 한반도 변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체계 구축
 - △해외평화협정 사례 등 분쟁지역 평화 정착 △경제협력 및 제도화 △문화 다양성 이해 △군축 및 비핵화 등 포괄적 안보개념 등 콘텐츠 개발
 - △분쟁·갈등 △평화경제 △사회 갈등 △여성·평화·안보 등 인간안보 분야 교육 운영

- o 평화를 위한 시민교육으로서 민주주의, 다원주의, 관용의 가치 함양을 위한 참여·소통형 교수 방법 개발
 - 평화감수성 훈련 및 타자와 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 극복, 통일에 대한 인식의 지평 확장 등

③ 미래세대 통일공감대 형성

- o 2030세대의 사회적 가치,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는 통일 대화의 장 마련
 - 일방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2030세대의 통일공감대 형성 필요
- o 사회에 진출한 2030세대 대상 평화·통일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 주력
 - 「2030세대 통일교육 로드맵」마련 및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를 강화한 '2030세대 통일담론' 프로그램 추진
 - 2030세대의 통일의식을 이해하고 쉽게 교감할 수 있는 차세대 전문가 양성
- o 초·중·고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대학생 평화·통일교육 기회 확대
 - △일선 교육현장 교사들의 역량 개발 △학생 참여·체험형 프로 그램 등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대학 평화·통일교육 모델 개발 및 강좌 지원 등을 통한 대학사회 내 평화·통일교육 논의·연구 활성화

④ 국제사회 통일환경 구축

- o 국제사회가 평화지향적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반영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치 공유

Ι

 \prod

 $\overline{\prod}$

IV

 ∇

- o 외국인 대상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통한 차세대 글로벌 한반도 전문가 육성
 - 해외 신진학자 및 외교관, 주한 유학생 대상 평화·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실시
 - 재외동포가 통일외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통일교육 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 o 다양한 교류를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 해외 평화교육 기관·전문가·교원 교류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인식하고 평화·통일교육 경험 사례 터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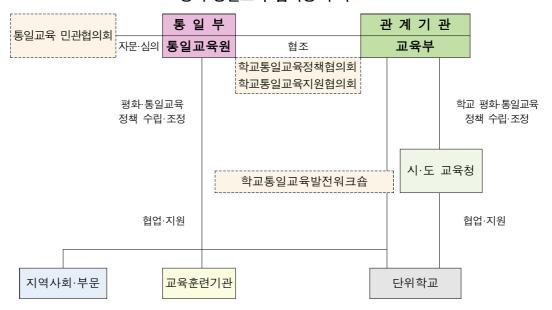
5 평화·통일교육 통합 네트워크 구축

- o 평화·통일교육의 전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지향
 - △학교와 사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지역별 △세대별 △부문별 (경제, 노동, 여성, 종교, 사회 등) 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교육을 망라하여 접근
- o 영역 간 융합을 단계적으로 확대
 - 평화·통일교육의 촘촘한 협력망을 구축, 영역 간 협력을 통해 선순환을 도모하고 교육 세분화 및 영역 확장 제고
 - 우선 세대별(2030세대) 부문별(경제) 영역을 결합하여 '2030세대 통일 비즈니스' 등 새로운 교육 공간을 창출하고 점진적으로 통합의 범위를 확대
- o 맞춤형 교육 실시 등 협력 인프라 지원
 - 학교 지역사회, 공공부문 주제별 부문 등의 융합을 위해 학생, 2030세대,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협력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

3 협업 체계 구축

- o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 통일부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및 정책 수립, 교육부는 학교 평화· 통일교육 추진 정책 수립 등 상호 협조
 - ※ 긴밀한 협력·협업을 위해 통일부-교육부 간 '학교통일교육정책정협의회'(국장급), '학교통일교육지원협의회'(과장급) 상시 운영
 -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교육청, 각급 학교의 유기적인 평화·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조정·협업
- o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형성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전문가, 시민단체 등 평화·통일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 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
 - ※「통일교육 민관협의회」(통일부차관-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의장 공동위원장): 평화·통일교육 방향·내용·제도 등에 대한 협의·자문을 위해 전문가·시민단체· 교육계·국회·유관부처 등 총 26명으로 구성

< 평화·통일교육 협력망 구축 >



Ш

Τ

П

 $\mathbb{I}\!\mathbb{V}$

V

 $\overline{\mathbf{W}}$

4 명화·통일교육 정책과제 목록

o 7개 정책과제 - 33개 세부추진과제

정 책 과 제	소관
1. 학교 교육의 플랫폼 활성화	+
1-1. 학교 교육 기반 강화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교육부・교육청
1-2. 학생 인식 제고	
1.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교육청
1-3. 대학 교육 기반 조성	
1. 대학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대학생 체험활동 및 통일 논의 활성화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사회 교육의 체계적 확장	
2-1. 공공부문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분야별 맞춤형 통일역량 강화	교육훈련기관
2-2. 지역사회	
1.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2.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추진	지방자치단체
2-3. 2030세대	
1. 2030세대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2-4. 부문별	
1. 평화·통일교육 부문별 거버넌스 구축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3. 전문인력 양성의 내실화	
3-1.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1. 교원 연수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교육부·교육청
2.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3-2.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1. 전문가 양성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2. 사회지도층을 통한 파급력 제고	통일교육원(교육연수과)

	 정 책 과 제	소관
Δ.		TC TC
••	4-1. 참여형 문화행사	
	1. 통일교육주간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지역별 통일공감대 행사	지방자치단체
	4-2. 온라인 홍보	17811112111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투이교으에(어그게바리)
5	1. 본다인 배제를 중인 중월등업대 확인 뉴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J.		
	5-1. 콘텐츠 개발	
	1. 출판물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2. 영상자료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3. 강의안 등 기타자료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4. 교수·학습 콘텐츠	교육부·교육청, 지방자치단체
	5-2. 이러닝 개발	
	1. 사이버강의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5-3. 실태조사 및 연구	
	1.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교육원(학교통일교육과)
	2. 평화·통일교육 학술 연구 지원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6.	체험공간의 특성화	
	6-1. 통일관	
	1.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2. 지역 통일관	통일교육원(사회통일교육과)
	6-2. 체험연수 시설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7.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7-1.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 해외 전문가 초청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평화·통일 글로벌 교류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교육부
	7-2. 글로벌 교육 추진	
	1. 해외 신진학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2.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

Ι

 Π

 \prod

 $\mathbb{I}\!\mathbb{V}$

7



정책과제

Ⅳ. 정책과제

1 학교 교육의 플랫폼 활성화

- ◎ 학생들의 평화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참여·체험형 교육 확대 등 기반 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추진
- * 법 규정 사항: 학교 통일교육 진행(제8조)

1-1 학교 교육 기반 강화

1-1-(1) 학교 평화·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 등을 통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방향 설정 및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추진
 -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연구, 평화·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 참고자료 개발 실시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 및 일선학교 프로 그램 지원
 - ※ △통일부·교육부 공동 사업: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교육주간, 학교통일 교육 연구대회 △통일부·교육청 협업 사업: 통일리더캠프, 학교통일교육 체험경비 지원, 통일문화경연대회 등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교육부·교육청 협업 사업: 학생 통일이야기 한마당, 학생 평화 축제 등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통일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간 유기적 협업 강화
 - 평화·통일교육 방향 설정,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남북 교육교류 등에 있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

【2019년 시행계획】

- o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포괄적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체* 운영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참고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연구학교 운영 및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지원 등 관련 협업 강화
 - ※ '학교통일교육 정책(지원)협의회'(통일부 교육부),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 (통일부-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

Ι

 \prod

 \prod

IV

V

1-1-2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교육부, 사 도 교육청

□ 2018년 추진 실적

- o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추진
 - 도덕, 사회, 역사, 지리, 국어 등 교과 수업에서 평화·통일교육 수업 실시 권장, 단위학교별 평화·통일교육 발전 방안 모색*
 - ※ 대표 사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지원단(초등 6명, 중등 6명, 고등 6명 교사) 구성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강사단(20명) 구성
- o 제6회 통일교육주간 계기수업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평화·통일교육 실시
 - 전국 교육청 통일교육주간 계기수업 평균 참여율 95% 달성
 ※ 참여 학교수 : △초등학교 5.904개교 △중학교 3.056개교 △고등학교 2.149개교
- o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평화·통일교육 실시
 - 현장 견학, 게임 수업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학교 현장에서 평화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평화·통일교육 추진
 -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 실시

- o 연간 교과과정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준수
 -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실천 지정학교 운영 등 평화·통일교육 추진 환경 조성, 통일교육주간을 적극 활용하여 계기수업 실시
 - ※ 예술, 체육, 가정, 과학 등 여러 교과에도 평화·통일교육 수업 실시, 프로젝트· 교과 융합 수업 실시 등도 병행
- o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생들의 통일역량 강화와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경기도교육청) 통일 인문학·동아리·토크콘서트 등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감 학교통일교육, 사업 운영

1-2 학생 인식 제고

1-2-①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학교 평화·통일교육 시범모델 개발 및 확산
 - '학교통일교육 연구학교'(40개교) 운영,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108명 참가) 개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957개교) 지원
- o 초·중·고 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
 - 체험교육경비지원(100개교), 통일리더캠프(37회), 어린이 기자단(250명), 통일문화 경연대회(지역본선/결선) 등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평화지향·학생 참여 유도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화·통일역량 함양 △'일상의 삶'과 연계 △학생들의 적성과 개성을 반영한 진로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뉴미디어, 토론식 수업, 현장 체험 등 다양한 교수기법을 활용

【2019년 시행계획】

- o 학교통일교육 연구학교 및 연구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보급 확산
 - 진로체험형 평화·통일교육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학교 지원 확대, 우수사례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 o 통일리더캠프 등 참여·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1,050개교), 학교통일 체험교육경비지원(100개교), 통일리더캠프(국내외 37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어린이 기자단(200명) 운영 등
 - ※ 판문점·도보다리 견학 등 현장활동 중심 프로그램 적극 발굴, '통일교육 크리에이터' 발굴 등 프로그램 다변화

Ι

 \prod

Ш

IV

V

1-2-②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18년 추진 실적

- o 학생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 활동 진행
 - 비무장지대 등 현장 방문, 토크콘서트, '학생 통일 이야기 한마당' 개최 및 학생 통일동아리 선도학교 운영 지원

※ 대표 사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평화통일기자단 70명 운영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평화통일의식 제고 및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참여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평화통일의식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o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등을 통해 평화시대 통일 리더 양성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교육 활성화

- ο 학생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현장 체험 캠프, 독일·일본·사할린 동포 등 외국 청소년과 평화통일 교류, 학생 평화축제, 평화통일대장정, 시·도별 통일 이야기 한마당 등을 실시하고 학생 동아리 지원*
 - ※ 학생 통일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연합 축제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현장 체험, 탐구 조사, 공연, 캠페인 등 운영 지원
- o 한독 학생 교류 및 동북아 평화체험 활동 등 학생 해외 체험 활동 지원
 - 독일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민주시민 역량을 강화, 평화 통일·역사 체험코스* 개발, '임시정부 대장정 통일미래 프로젝트' 등 역사캠프 진행
 - ※ (경기도교육청) 김포지역 '평화누리길' 체험코스 개발

1-3 대학 교육 기반 조성

1-3-① 대학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통일교육 선도대학 중심으로 대학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 3년차를 맞은 선도대학(6개교)은 타 대학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우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확산
- o 대학 평화·통일교육 지원 법제화
 - 통일문제 관련 학과 설치·강좌 개설 권장 및 경비 지원 등을 법제 화하여 대학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 "정부는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 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 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8조의 3항)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 확산을 통한 대학생 평화통일인식 제고
 - 선도대학의 대학별 평화·통일교육 모델,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
 - 학술회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주변 대학으로 평화·통일교육 모델 확산

【2019년 시행계획】

- o 통일교육 선도대학 추가 지정
 - '19년 예산 확대를 반영, 2~3개 선도대학을 추가 선정, 신규 선도 대학의 4년간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o '16년 선정된 6개 선도대학의 성과 확산
 - 4년차 사업계획 수립, 중간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대학별 평화· 통일교육 모델 정립 후 주변 대학으로의 확산, 4개년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방향 도출

Ι

П

 \prod

IV

V

1-3-② 대학생 체험활동 및 통일 논의 활성화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추진
 - 총 37개 대학 57건의 특강(현장학습) 및 정규강좌 개설을 지원
 -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연합학술세미나, 교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진행
- o 대학생들의 자율적 통일체험 활동 지원
 - 대학생 '통일 논문 및 홍보영상' 공모전 실시, 전국대학통일문제 연구소협의회(이하 '대통협')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활동* 지원
 - ※ 통일교육주간 계기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 대회, 통일토론대회, 통일동아리 활동 등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대학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대학생들의 평화·통일교육 기회 및 대학 사회 통일 논의 확대
- o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통일·북한 문제 논의 및 연구 지원

- o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개설 지원 확대
 - '통일교육 선도대학' 및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 연계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정보 공유 강화, 워크숍,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대학 평화·통일교육 발전방안 모색
- o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통일·북한 문제 논의 및 연구 활성화
 - 통일동아리, 토론대회 등 대학생들의 학교밖 평화·통일교육 활동 지원 및 대학생 '통일 논문 및 홍보영상' 공모전 추진
 - 대통협 사업과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의 평화·통일교육 활동 제고

2 시회 교육의 체계적 확장

- ◎ 분야별·지역별·세대별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실시 등 평화통일 의지 제고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 법 규정 사항: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제6조의7), 지역통일교육 센터(제6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통일교육 반영(제7조), 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 통일교육위원(제10조의2)

2-1 공공부문

2-1-(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개정「통일교육 지원법」시행(18.9월)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도입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실시 의무
- o 통일교육 의무 실시에 필요한 강사 명단(121명), 교육 교재(표준 강의안· 영상 콘텐츠), 사이버강의(3종) 제공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통해 공공부문 통일역량 강화
 -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진
- o 해당 분야의 통일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

【2019년 시행계획】

- o 공공부문 통일교육 시행 초기 단계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및 모니 터링 실시
 - 맞춤형 콘텐츠 및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20년 공공부문 통일교육 결과 평가 준비
 - ※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은 익년 2월까지 교육 실적을 제출

Ι

П

 \prod

IV

V

2-1-② 분아별 맞춤형 통일역량 강화 교육훈련기관

□ 2018년 추진 실적

- o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 분야와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실시
 -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축산·국방·법률·통계 등 해당 분야와 통일문제를 접목하여 맞춤형 교육 운영
 - ※ 대표 사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남북농업협력의 이해 과정 운영 (경찰 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중 북한학 강의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통일을 준비 하는 데 필요한 자질 향상
- o 남북관계 진전 및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여 교육훈련기관 내 평화·통일교육 과정 확대
 - 통일교육원과 각 교육훈련기관 합동특강 형식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도모

- o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계획에 평화·통일교육 과정 포함
 - 학사학위과정 운영, 공무원 신규자, 승진자 등 대상 특별교육 등
 - ※ 권고 시수(시행령 제6조)
 - •2주 이상 3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 4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교육훈련과정 : 8시간 이상
- o 북한 현황, 남북교류협력 방안, 독일 등 해외 사례 분석, 통일준비 등 분야별 주요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
 - 현장 견학, 교육기관 간 합동교육, 자율독서 등 다양한 교육 방식 도입 ※ 북한 통계. 농업 남북협력 사례. 북한 경찰의 이해 등

2-2 지역사회

2-2-①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통일교육위원 신규 위촉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저변 확대
 - 제21기 통일교육위원 811명 신규 위촉 및 연찬반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 신규 지정 및 지역 특화 평화·통일교육 추진
- o 통일교육협의회 지원을 통한 민간 평화·통일교육 확산
 -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효과성 제고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시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평화· 통일교육 추진
 -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실시
 - 통일교육위원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의지 결집 및 통일 기반 조성
 - 통일교육협의회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평화·통일 교육 저변 확대

【2019년 시행계획】

- o 통일교육위원 간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
 - 통일교육위원 전체 워크숍 및 해외위원 초청 연찬회 실시 등
- o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체계 정비
 -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통일교육센터 역할과 기능 확대 및 정기적 업무협의 채널 구축 등
- o 회원단체 간 연대 협업사업 확대 등 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한 민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Ι

 \coprod

 \prod

IV

V

2-2-2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추진 지방자치단체

□ 2018년 추진 실적

- o 연령 및 대상 특성을 반영한 포럼·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 ※ 대표 사례 : (광주광역시) 평화통일 놀이터, 음악과 미술이 있는 평화· 통일교육, 대중강좌 등 찾아가는 시민평화통일교육 실시 (경상북도) 경북통일화랑 아카데미 개최
- o 시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공모사업 등 추진
 - 시민단체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자치구 특성과 연계한 현장체험식 평화·통일교육 지원
 - ※ 대표 사례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통일시민대학연합회 '통일일꾼 양성 저변 인력 확대 사업'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지역 통일역량 강화
 - 지역별 평화·통일계획 수립,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 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 대상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실시
- o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시민교육 활성화
 - 교육청, 지역통일교육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

- o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강좌·특강, 공모사업 등 확대 추진
 - 정책 아카데미 등 개최 및 시·군 단위 공모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실시
- o 민주평통 지역회의,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의 평화·통일교육 사업 지원
 - 민주평통, 시민단체 등이 개최하는 청소년 대상 통일미래체험, 통일 공감 강연회 등 평화·통일교육 및 캠페인을 위한 사업* 지원
 - ※ (울산광역시)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 (대구광역시) 민주평통 지역협의 회 청년통일콘서트, 통일포럼 등 통일활성사업 지원

2-3 2030세대

2-3-① 2030세대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2030세대의 부정적인 통일인식 개선을 위해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접근 방식 및 콘텐츠 개발 노력 추진
 - '대학생' 통일인식 개선에 한정되어 있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2030세대로 확대하여 신규 사업 개발
 - ※ 통일필요 : △전체 53.8% △20대 41.4% △30대 39.6%('17년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2030세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통한 2030 세대의 통일공감대 확대
 - 민족 당위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2030세대들의 입장과 시각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을 추진

【2019년 시행계획】

- o 2030세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마련
 -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과 참여 등 2030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2030세대 통일교육 로드맵」마련
- o 2030세대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의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일담론' 창출 프로그램 추진
 - △온라인 소통·참여 프로그램 △통일 비즈니스 공모전* △통일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여 관심 유도
 - ※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청년 사업가들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돕기 위해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고민 하는 대회 개최

Ι

 \prod

 \prod

V

V

2-4 부문별

2-4-① 평화·통일교육 부문별 거버년스 구축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0 민간의 통일 논의 활성화 및 평화·통일교육 수요 증대에 대응
 -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확대 및 다양한 부문과의 협력 강화
 - 신규 교육 영역에 대한 수요 발굴 및 기관 간 접촉망 구축을 통해 '19년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학교·지역사회 등 기존 사회 평화·통일교육 영역을 확장, 사회·경제· 여성·노동·종교 등 다양한 부문과의 거버넌스 구축
 - 부문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평화·통일교육 추진으로 평화통일의 필요성이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
 - 협력의 대상과 범위는 지속 확대, 각 부문이 평화·통일교육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지원

- o 사회·경제부문 주요 단체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등 협력 관계 구축
 - △각 단체에 강사·콘텐츠 등 지원*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명단 제공 △분야별 원내 교육 편성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 ※ 역할 분담 : △통일교육원(통일교육 강사 및 콘텐츠 제공) △사회·경제단체 (회원 대상 교육 대상자 확보)
 - ※ 교육 내용 : 남북관계 현황 및 정부 통일정책을 기본으로 단체별 요청 사항 포함
- o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를 보아가며 협력 단체 확대

3 │ 전문인력 양성의 내실화

- ◎ 핵심 전달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학교,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차세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전문성 강화
- * 법 규정 사항 :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제9조의2)

3-1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3-1-① **교원 연수** 통일부(통일교육원), 교육부, 시·도 교육청

□ 2018년 추진 실적

- o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전달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 초등 교장(감)·교사, 증등교장(감)·교사, 유치원 교원, 통일교육 연구학교 교사, 예비교사 등 교사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1,357명 수료)
 - 한독 교원 교류, 교원 국내외 직무연수 및 원격 연수 운영, 중·고등 역사·사회과 교사 대상 특강 실시도 진행
- o 시·도 교육청 또는 연수 전문기관 지정·위탁으로 학교 현장에서 평화· 통일교육을 선도할 '핵심교원' 양성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통일역량 제고
 - 학생들의 평화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교사들이 핵심 전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강화

【2019년 시행계획】

- o 교원 대상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기존 연수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화· 통일교육 콘텐츠 및 교수기법 등 강의
- o 핵심교원·관리자 양성 확대 및 차세대 교원 역량 강화
 - 핵심교원 및 예비교사 대상 평화·통일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관리자, 시·도 전문직원 등 관리자 연수도 실시

Ι

 \prod

Ш

IV

V

3-1-②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범정부 차원의 통일 전문인력 양성
 - 통일정책지도자과정(국·과장급 57명, 44주), 통일미래기획과정(실무급 15명씩 연 2회) 등 공무원 대상 장기 과정 운영
- o 기관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베를린자유대 연수 대상자 등 대상별 교육 진행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타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 연계도 추진
- o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군장교, 보안경찰 등 통일·안보 분야 담당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진행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확대를 통해 범정부 통일정책 역량 강화
 -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 국가 차워의 전문인력 양성

- o 공직자 통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속 운영
 - 통일 관련 현안을 이해하고 소관 업무와 남북교류협력, 통일 정책 기획을 연계하는 역량 구축
 - 중견간부·실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류협력·비상대비 등 담당 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대상 맞춤형 통일교육 추진

3-2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

3-2-1) 전문가 양성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시행('18.9월)에 따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육 공공부문 전문강사 양성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강사 37명 양성
- o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
 - 통일·북한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 실시,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 방안 연구용역 실시 등 통일미래 인적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평화·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일미래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
 - ※ 사회통일 전문강사 평균연령 : △'15년 57.8세 △'16년 51.3세 △'17년 53.9세

【2019년 시행계획】

- o 2030세대와 쉽게 교감할 수 있는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준비
 - 차세대 통일 및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예산 확보 등 기반 마련
 - 기존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을 2030세대 대상 통일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개편, △평화 △경제 △국제분야 교과목 확대
- o 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학교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30명, 4주)

Ι

 \prod

 \prod

IV

V

3-2-② 사회지도층을 통한 파급력 제고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여론 주도층 대상 제8기 통일정책최고위과정(38명) 운영
 - 법, 보건·의료, 경제·금융·산업, 통신, 언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CEO 및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 지도층 인사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통일문제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강의 및 현장 견학 진행
 -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 위원회 위원장. 前 문화재청장 등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사회 지도층이 통일공감대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 제고
 - 오피니언 리더가 각 분야에서 통일과 관련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o 통일정책최고위과정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통일공감대 확산

- o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으로 제9기 통일정책최고위 과정 구성
 -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각계각층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확대, 종교·문화·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통일교육 수요 발굴
 - △대북·통일정책 △통일외교 등 통일문제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실시
- o 통일정책최고위과정 네트워크 지속 구축
 - 총동문회 등을 통해 기존 수료생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추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4 국민 참여와 통일공감대 확산

○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의지를 결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 강화 및 통일공감대 확산

* 법 규정 사항: 통일교육주간(제3조의3)

4-1 참여형 문화행사

4-1-1 통일교육주간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평화의 싹, 함께 키우는 통일"을 주제로 통일부·교육부 공동주최로 제6회 통일교육주간 진행
 - △개막행사 △참여·체험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등 민·관 협업으로 평화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캠페인 진행
- o 통일교육주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정 교육주간으로 지정('18.9월 시행)
 -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 으로 한다."(법 제3조의3)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통일교육주간을 통해 국민의 평화통일의지와 평화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운영
 -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세대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공감 확산의 장으로 발전

【2019년 시행계획】

- o 법정 교육주간 첫 해로서 제7회 통일교육주간(5.20.~5.26.)에 다양한 기관의 참여 확보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하는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통일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진행

Ι

 \prod

 \prod

IV

V

4-1-② 지역별 통일공감대 행사 지방자치단체

□ 2018년 추진 실적

- o 지역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실시
 - 청소년 대상 통일캠프, 랩 경연대회, 토크콘서트, 통일박람회, 마라톤 등 지역별 체육행사·문화공연 추진
 - ※ 대표 사례: (전라남도) 청소년 평화통일 랩 대회 (세종특별자치도) 평화 통일 공감 토크콘서트 (대구광역시) 대구 통일박람회 개최 (경상북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음악회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지역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감 프로그램 확대
 - 개인, 청소년, 가족 단위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 체험 행사 마련
 - 여성, 청소년, 시민단체 등 계층별 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일공감대의 외연 확장

- o 지역 행사와 연계한 평화·통일 공감대 행사 추진
 - 토크콘서트, 통일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이 통일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공감대 확산 행사* 지원
 - ※ (광주광역시) 광주 평화통일마라톤 지원

4-2 온라인 홍보

4-2-1) 온라인 매체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소식 전달 및 소통
 -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계정을 운영하여 평화· 통일교육 관련 행사 및 공감대 확산 콘텐츠 공유
 - 뉴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 광고 송출
- o 통일교육주간 계기시 평화·통일교육 관련 집중 홍보
 - △기획보도·방송 등 언론 홍보 △배너, 포스터 등 현장 홍보 △ 온라인 이벤트 등 진행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정책 홍보, 단순 정보 전달에서 참여형 소통으로 전환
 - SNS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통일·통일교육 관련 논의가 다방면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o 통일미래세대가 친숙한 다양한 매체·채널을 활용하여 소통을 통한 통일공감 확산
 - 평화·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참여할 수 있도록 IT 기반 교육 환경 구축

【2019년 시행계획】

- o 소통·참여 강화를 위한 뉴미디어 사업 추진
 -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매체에 최적화된 수요자 중심의 소통·홍보 추진

Ι

 \prod

 \prod

IV

V

5 뉴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

◎ 출판물, 영상자료,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평화·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누구나 쉽게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닝 (E-Learning)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연구 활동 지원

5-1 콘텐츠 개발

5-1-① **출판물**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2019 통일문제 이해』, 『2019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 발간
 -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 및 균형성을 제고하고, 통일 필요성 논리에 경제적 관점 반영
- o 다양한 맞춤형 도서자료 개발
 - 『통일 그림동화』(유아), 『청소년 통일사전』(청소년),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초등),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일반) 등 개발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자료 다종화
 - 세대별·분야별 등 다양화된 교육 수요에 맞춰 콘텐츠 개발
- o 통일·북한 관련 내용의 편향성 문제 극복
 - 교재 집필과 검토에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균형성 유지

- o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평화·통일교재 콘텐츠 개발
 - 『통일 그림동화』, 『평화·통일교육 교재』, 『명사 특강』, 『통일·북한 문제 입문』 등 대상별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 교재 개발

5-1-② 영상자료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캠페인 광고 및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통일공감대 조성
 - 캠페인 광고 "선을 이어 희망이 켜졌습니다"(CJ 채널, 아리랑 TV 등), 특집 프로그램 톡!톡! 보니하니(EBS), 유퀴즈온더블럭(tvN), 원데이 푸드트립(o'live) 제작·방영
- o 수요자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영상자료 개발
 - 미래세대의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클립영상, 공감영상, 공공부문 교육을 위한 영상과 재외동포용 영상 등을 제작·보급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청소년, 2030세대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영상 콘텐츠 개발 확대
 - 젊은세대에게 익숙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통일 메시지 전달
- 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매체·기술을 도입하여 교육 효과 지속 제고
 -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기술과 다양한 집단·연령층의 수요에 대응 하는 방식의 교육 추진

【2019년 시행계획】

- o 영상자료 개발을 확대하여 교육자료 수용성 제고
 - 캠페인 광고, 특집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클립 영상 등 간결하고 감각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보급
- o TV, SNS 등 보급 채널을 확대하여 영상 콘텐츠 확산
 -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개발

Ι

П

 \square

IV

 ∇

5-1-③ 강의안 등 기타자료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시행을 위해 표준 강의안 개발·제공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 o 통일교육주간 계기 일일 통일교사의 통일교육 강의안 제공
 - 초등용, 중고등용, 대학·일반용 등 학년용을 구별하여 맞춤형 교육 자료 제공
- o 재외동포 대상 강의안 제공
 - 저학년·고학년·행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안을 개발하고, 동포들이 많은 지역인 중국·러시아판도 제작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평화·통일교육 강의 콘텐츠 개발
 -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내용 마련
- o 새로운 교육 대상 발굴 및 수요자 맞춤형 강의안 개발·보급 확대
 - 기존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고 평화·통일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강의 자료 개발

- o 평화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새로운 강의안 개발
 - 교육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의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 ο 공공부문 통일교육 강화 지원
 - 공공부문용 영상자료별로 강의안을 제작하여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5-1-④ 교수·학습 콘텐츠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2018년 추진 실적

- o 평화·통일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 평화·통일교육 관련 주요 교과 과정(안), 주제 학습(안)* 마련,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활동 자료 개발
 - ※ 도덕적 딜레마로 평화통일 수업하기, 한반도 통일전략 마스터플랜 만들기, 북한 언어 탐구생활 등
 - ※ 대표 사례: (경기도교육청)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교과용 도서 보급
- o 교육부 '(가칭)인터넷 통일학교(tongil.moe.go.kr)' 개편·운영
 - 교원, 학생들의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교수· 학습 자료 게시 관련 웹페이지 개편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평화와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과(목)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초·중·고 평화·통일교육 관련 범교과 학습 자료 개발·보급

【2019년 시행계획】

- o 교수·학습 프로그램 내용 보완 및 활용성 높은 수업 콘텐츠 발굴
 - 도덕, 사회, 역사, 국어, 과학, 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과(목)에서 평화·통일교육 수업 콘텐츠 제작 및 공모 실시
- o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 학습 과정(안)*, 학급별 자료* 등 개발
 - ※ △통일동아리 선도학교 활동 등 학생 체험 활동 자료집 △교사 수업연구회 수업 모델 및 자료 개발 등
 - ※ (경기도교육청)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유치원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개발 (강원도교육청) 『통일 강원도 교과서』개발

Ι

 \prod

Ш

IV

V

5-2 이러닝 개발

5-2-1 사이버강의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강의 콘텐츠 제공
 - △통일문제 △북한이해 △국제관계 등 총 20과목 개발
- o 평화·통일교육 사이버강의 개설 18년 만에 수강인원 10만 명 상회
 - 교원, 공무원, 일반인 등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통일교육 및 방북 교육 수강
 - ※ 통일교육 사이버강의 수강인원 : △통일교육원 108,00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72명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대상을 발굴하고 세대별·분야별 대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공
 -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2030세대 등

- o 평화·통일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한 평화통일의식 실천 역량 제고
 -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 평화지향적 가치관 등 평화·통일교육 사이버강의 과목 개설
- o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으로 평화·통일교육 실질화
 - 기관별 과정 시범운영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조기 정착을 지원 하고, 세대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2030세대 등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 ※ 교육과정 개편(안): 일반(△공공부문 △교원 △민주시민 △2030평화아카데미), 특수(사이버방북안내)

5-3 실태조사 및 연구

5-3-①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초·중등학교 561개교 대상 '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18.10월~12월)
 - △초등 5·6학년 학생 82,497명 △사회·도덕·역사 등 통일교육 관련 교사 등 4,166명 대상 통일인식·대북인식·통일교육 관련 설문

< 2018년 학교통일교육 학생·교사 실태조사 >

o 초·중·고 학생

- "북한에 대한 인식" 관련,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전년대비 증가 * 협력/지원 대상(52.1% ⇒ 63%), 적/경계의 대상(41% ⇒ 33.4%)
-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62.2% ⇒ 63%) * 초·중·고 편차는 중·고등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감소

0 교사

- "통일교육 연수 경험(직무연수) 있음" 응답이 소폭 증가(28.9% ⇒ 31.5%)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자료개발 50.2% △체험활동 44.3%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31.7%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업, 학생들의 평화통일의식 조사 지속
 -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보완

【2019년 시행계획】

- o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평가
 - 2018년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환류 실시
- o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 전국 초·중등학생, 교원 대상으로 통일의식 및 평화·통일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 문항설계, 조사방법, 분석기법 등 개선

Ι

 \prod

 \prod

IV

V

5-3-② 평화·통일교육 학술 연구 지원 통일부(통일교육원),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 2018년 추진 실적

- o 제6회 통일교육주가 계기 '2030세대 통일교육'을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 2030세대 통일의식 분석 및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평화·통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o 지역별로 평화통일, 동북아·역사문제 관련 평화회의·포럼 개최
 - ※ 대표 사례 : (경상북도) 경상평화통일전문가 포럼 개최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 평화교육 포럼 개최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논의 및 연구를 폭넓게 지원
 - 교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평화·통일교육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논의를 집대성하는 공론의 장 마련

- o 제7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평화·통일교육을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 전문가, 교사 등 교육 관계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인접학을 총 망라한 평화·통일교육의 기틀 마련
- o 교원 평화·통일교육 연구회, 학습동아리*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 공유 및 컨설팅을 통해 연구 성과 제고
 -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 개발, 체험활동 자료 개발 등
 - ※ (경기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수업연구회 지원 (강원도교육청) 글로벌 평화교육 정책 포럼 개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정책 포럼 개최
- o 시민단체의 평화통일 관련 토론회, 국제포럼 지원
 - ※ (서울시) 북한 관련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포럼·세미나 개최

6 | 체험

체험공간의 특성화

◎ 통일·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 미래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을 운영하여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법 규정 사항: 통일관(제6조의4~제6조의6)

6-1 통일관

6-1-①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람객은 '17년 대비 20% 증가하여 41만 명
 - 관람객 편의 제고, 기획전시전(4회),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전시 자료 현행화 등 전시 콘텐츠 강화
 - 지자체·교육청·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 확대, 오두산전망대 기자단 운영, SNS·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대표적인 통일문화 체험공간으로 개발
 - 체험활동·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2019년 시행계획】

- o 운영 방식 변경(위탁 운영 → 직접 운영), 직영을 통해 입장료 무료화 등 서비스 개선 추진
- o 전시 콘텐츠 현행화 및 홍보 활동 강화
 - 연 3회 이상 기획전시전 개최, 전시물 현행화 추진
- o 관람객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물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지속 추진

Ι

 \prod

 \prod

IV

V

6-1-② 지역 통일관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통일관 법제화를 통한 운영·관리 강화 및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통일관 지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정·변경 기준 마련
 - 각 지역 통일관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12개 통일관(오두산 통일전망대 포함) 총 140만 명 관람
 - ※ 5월, 10월 서울·부산 통일관 등 9곳에서 체험행사 진행, '17년 대비 참여자 16천명 증가
 - 12개 통일관 전시 패널 및 동영상 교체, 전시환경 개선 및 대전 통일관 리모델링 실시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통일관의 학습·교육시설로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통일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전시환경 개선 사업을 지역별로 지속 추진하고,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관리·운영의 내실화 도모
 - 공통 체험 프로그램 교구 개발 및 상시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 o 지역 통일관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 콘텐츠 보강
 - 전국 통일관 전시패널 현행화 및 경남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 실시
- o 전국 통일관 상·하반기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5월, 10월)
 -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VR(가상현실체험) 프로 그램 개발 등 지원
- o 법 개정에 따른 통일관 운영 규정 마련을 통해 통일관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6-2 체험연수 시설

6-2-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2018년 추진 실적

- o 청소년 및 취약계층 등 대상 통일체험연수 실시
 - 155개 학교·단체에서 연인원 39,999명 연수 참여
- o 남북청소년교류 행사 지원 및 체험연수 환경 개선
 - 국제유소년축대회 참가 지원, 미래체험관 VR 설치 등
- o '18년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기관' 선정(여가부)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통일체험연수 전문화·내실화
 - 프로그램 개선 및 연수의 질적 수준 제고, 프로그램 보급
 -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세대·계층 대상 특화사업 추진
- o 남북청소년교류 관련 행사 개최·지원, 연수 환경 개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계기시 행사 지원, 연수 기반시설 확충 등

【2019년 시행계획】

- o 통일미래세대 통일체험연수 운영
 - 41개 학교·단체 연수, 프로그램 공모·개선·보급, 전문인력 양성
 - 북한이탈·다문화·재외동포·지역연계·가족단위 등 특화사업 추진
- o 남북청소년교류 등 평화·통일행사 참가·지원
 - 네트워크 구축 및 행사 지원, 유관기관 행사 연계 연수 진행

Ι

П

 \prod

V

V

7 │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해외 신진학자, 외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교육 실시, 해외 전문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외연 확대

7-1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7-1-1 해외 전문가 초청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한반도 문제 전공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학·연구기관 방문 순회 특강 및 전문가 포럼 등 실시
 -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전문가 3회 초빙, 전문가 대담 및 특강 총 24회에 약 1,030명 참석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통일문제에 대해 국제적 시각을 반영한 평화·통일교육 강화 및 외연 확대
 - 대학 평화·통일교육과 연계,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활용

- o 해외 전문가 초빙 사업 확대·개편
 - 저명인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공분야가 다양한 중견·유망학자도 초빙하고, 초청 인원도 확대(4회 → 5회)

7-1-② 평화·통일 글로벌 교류 통일부(통일교육원), 교육부

□ 2018년 추진 실적

- o 한독 교원 교류, 독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독일 사례 연구
 - 독일주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와 협력, 독일 교원을 초청하여 현장 교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독일 평화교육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평화통일을 대비한 교육 방안 모색
 -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독재청산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독일 민주시민 양성교육, 주제별·연령별 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 사례 연구도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평화교육, 통일·통합 사례 등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발전 방안 모색
 - 교원 및 전문가 교류 등 평화 정착 사례 연구를 통해 평화·통일 교육 역량 강화

【2019년 시행계획】

- o 독일 등 해외 교원과 교류활동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경험 사례 공유 및 교워 평화·통일인식 제고
 - 동·서독 통일 과정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 대비 시사점을 찾고 과거사 청산, 평화교육 관련 체험활동, 토론회 등 프로그램 운영
 - ※ 사회 통합과정, 교육 현안, 교육 정책, 초·중등 수업 사례 등
- o 해외 평화교육 전문가 교류를 통해 갈등 해결, 사회통합 등 탐구
 - 북아일랜드, 발칸, 벨기에 등 해외 평화교육 사례를 통해 교육과정, 교육정책 등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시사점 모색

Ι

 \prod

 \prod

V

V

7-2 글로벌 교육 추진

7-2-1) 해외 신진학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통일부(통일교육원)

□ 2018년 추진 실적

- o 「2018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 운영
 - 미주·유럽·아시아 지역 18개국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신진학자 및 공무원 21명 참석,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진행
 - ※ △정부정책·북한동향·남북교류협력 사례 설명 △연구기관과 공동 학술회의 개최 △판문점 등 통일현장 방문 등
- o 기존 통일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자 대상 네트워크 구축
 - 역대 참가자 정보 최신화 및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 구축, 참가자 대상 통일 관련 동향 제공
 - ※ 참가자 방한(6회), 해외 기관 협업(2회) 계기시 인적 네트워크 활용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참가자의 국적 다양화를 지속 추진하여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충
- o 기존 통일아카데미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친한 성향 인사로 유도

- o 동남아, 중부 유럽, 대양주 등으로 참여 국가를 다양화하고 평화 교육 관계자의 참여 추진
 - 특히 해외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

□ 2018년 추진 실적

- o 재외동포 등 대상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실시
 - 재외동포·주한유학생·외국대학생 대상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과 비전 공유를 위한 글로벌 과정 운영(9회, 400명)
 - 재외동포 교육의 경우 해외통일교육위원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지역과의 연계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o 지식 습득을 넘어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과정 확대·개선
 - 해외 입양 동포사회 및 국내 외국인학교 등 평화·통일교육의 사각 지대도 조명,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9년 시행계획】

- o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글로벌 평화·통일교육을 결합하여 국내 외국인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 확대
 - △통일교육 선도대학 내 한국어학당 등 유학생반 대상 교육 △통일 교육주간 계기 국내 초·중·고 외국인학교 대상 특강 실시
- o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
 -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인사 대상 평화·통일교육 특강 진행
- o 글로벌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해외용 콘텐츠 개발·보급
 - 재외동포 어린이 대상 도서, 영상 및 외국어 자막 제작·보급, 해외 한인학교, 해외통일교육위원 등을 통해 교민사회에 보급

Ι

 \prod

 \prod

IV

V



협조·요청사항

V. 협조·요청사항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실시

① 대상 기관

- o 법은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법 제6조의7)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통일교육 의무 대상 기관 >

- o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과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과 그 소속기관
- 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18년 기준 338개)

② 교육 방법

- o 매년(1.1~12.31) 1회 이상,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실시
 - 교육 방식은 △집합 교육(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강의 △ 기관 특성에 맞는 기타 방법 중 선택
 - 책 콘서트나 연구모임 등 기관의 특성과 구성원의 선호에 맞춘 다양한 방식도 활용 가능
 - ※ △집합 교육(추천강사, 외부 초청강사, 소속 직원 등 대상 기관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실시)
 △시청각교육(교육 대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교육 관련 영상자료를 시청)
 △사이버강의(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센터'에 접속하여 개설된 강의를 수강)
 - ※ 교육자료 등의 단순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은 불인정

Ι

П

 \prod

IV

V

< (예시) 통일교육의 내용 >

과목	내용 요소
통일 문제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 남북관계의 전개 ·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 통일의 비전과 과제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등
북한 이해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 변화 전망 등 ·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외교·군사·경제·교육·문화·예술, 주민생활 등)

- *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참고, 동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 마당'에서 내려받기 가능
- o 통일부(통일교육원)는 대상 기관들의 원활한 통일교육을 위해 강사 및 콘텐츠 지원
 - △추천강사 리스트 △통일교육 영상자료 △사이버 통일교육 프로 그램 제공 및 매월 사이버강의 수강 결과 통보
 - '19년부터는 의무 대상 기관의 수요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시범 추진
- o 대상 기관들은 통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준수 및 유의사항 숙지 필요
 - 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지향 △개인적· 당파적 이용 금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법 제3조)
 -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 가능(법 제11조)

③ 교육 실적 제출

- o 대상 기관들은 매년 2.28까지 전년도 통일교육 실적 제출
 - 교육 대상 직원의 70%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출된 실적을 집계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
 - ※ 시행 첫 해인 '18년에는 시행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실적 제출을 유예(시행령 부칙 제3조)

2 | 통일교육주간 참여

① 통일교육주간 개요

- o 국민의 통일의지 결집을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규정(법 제3조의3)
 - △기념행사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 매체 등을 통한 홍보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등 추진
 - '19년 제7회 통일교육주간(5.20.~5.26.)은 법정 교육주간으로 지정되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별 통일교육주간 행사개최 필요

2 제7회 통일교육주간(5.20.~5.26.) 참여 요청

o (교육청) 통일교육주간 계기수업 진행

< 2018년 각 교육청별 계기수업 참여율 >

구분	대전	경북	대구	경기	부산	전남
초	100	99.6	100	95.2	100	100
중	100	100	100	92	100	100
고	100	99.5	100	88.4	100	99.3
소계	100	99.7	100	93	100	99.9
구분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초	95.5	99.2	100	100	100	78.3
중	95.8	96.2	100	100	100	52.8
고	79.4	93.6	100	100	99.3	41
소계	91.7	97	100	100	99.9	64.8
구분	경남	충남	충북	전북	제주	합계
초	100	98.8	100	98.6	100	97.1
중	100	94.2	100	97.1	100	94.9
고	100	91.5	100	90.3	100	90.6
소계	100	96.4	100	96.7	100	95.1

- o (지자체) 자체 통일교육·문화 프로그램 추진 및 통일관, 지역통일 교육센터, 시민단체 등의 통일교육주간 행사 지원
- o (부문별 기관)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추진
 - 학술세미나,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홍보 부스 운영, 공모전, 온·오프 라인 이벤트 등

Ι

 \prod

 \square

IV

V

3 │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기관 평화·통일교육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o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시책 수립·시행 (법 4조)
 - 지역사회 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및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o 지역별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 △지역통일교육계획 수립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역통일 교육센터 지원 △통일교육의 위탁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
 - ※ 조례 제정 지자체(11):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 조례 제정 교육청(9) :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② 교육훈련기관 평화·통일교육 실시

- o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과정에 평화·통일교육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교원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등(법 7조·시행령 6조)

< 통일교육 권장 시수 >

- 0 2주 이상 3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 o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교육훈련과정 : 4시간 이상
- o 6개월 이상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통일교육 표준 조례(안)

00시(도) 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도)내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통일교육을 통해 시(도)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하고 통일의지를 확립하여 통일 환경의 기반을 마련한다.
- 제3조(시장(도지사)의 책무) ① 시장(도지사)은 시(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국가의 시책에 준하는 지역별 통일교육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도지사)은 시(도)내 공직자, 시(도)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시장(도지사)은 시(도) 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 등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군·구의 책무) 시·군·구는 시(도)의 통일교육 시책에 따라 시· 군·구의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역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시장(도지사)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oo시(도)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 2.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 3.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4.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6. 지역사회 통일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지역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Ι

П

 \prod

TV

V

- 제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도지사)은 통일대비 업무 및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부(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통일교육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원 등) ① 시장(도지사)은 통일교육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oo시(도) 통일교육센터(이하 "시(도)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도)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 및 지원
 - 2. 공직자 및 시(도)민 대상 통일교육 실시
 - 3. 시(도)내 민간단체, 시·군·구,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 지원
 - 4. 통일·문화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도)민 대상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도지사)은 법에 따라 oo시(도) 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도지사)은 시(도)가 설치한 교육기관, 시(도) 통일교육센터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도지사)은 시(도) 및 시·군·구 공직자에 대한 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부(통일교육원)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교재지원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도)내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임차·이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도지사)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록

VI. 부록

2018년 통일교육 통계

① **통일교육원 교육과정별 통계**(원내 교육 + 원외 교육)

							: 회/명)
	교육과정	횟수	인원		교육과정	횟수	인원
전 문 과	통일정책최고위과정	1	38		통일교육위원반	3	101
	통일정책지도자과정	1	57	사회	민주평통자문위원반	1	68
	통일미래기획과정	2	30	통일	통일단체반	12	582
ㅋ 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4	160	교육	종교단체반	4	155
0	소 계	8	285	과정	하나센터반	3	87
	통일부공무원반	3	127		소 계	23	993
	중견간부공무원반	3	91		재외동포반	3	90
	중견실무공무원반	3	83		해외 신진학자반	1	21
공	군장교반	2	70	통일	외국대학생반	4	64
직	보안경찰반	2	80	교육	주한유학생반	2	90
자	지자체공무원반	3	107	과정	국경선평화학교	1	47
통	베를린자유대반	2	39		소계	11	312
일	공직역량강화반	1	27	특별	차세대 통일전문가반	2	28
교	비상대비 업무담당 반	1	28	교육	대학교수반	1	29
육	공공기관반	4	120	 과정	특별반	22	1,352
r 과	타 교육기관 연계과정	9	904	70	소계	25	1,409
정	기무사령부반	2	65	l L	공무원·일반인과정	11	92,607
	통일정책지도자과정반연찬	1	26		교원과정	11	12,172
	통일미래기획과정반(연찬)	1	50	통일	학점인정과정	2	114
	정보경찰반	1	30	교육	방북교육과정	상시	3,195
	소 계	38	1,847	과정	통일직무과정	4	63
	중등교장(감)	5	279		소계	28	
	중등교사(기본)	3	136		원내교육 총계	162	,
	중등교사(심화)	2	98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957	47,273
	- ' ' ' ' ' ' ' ' ' ' ' ' ' ' ' ' ' ' '				일일통일교사	24	2,543
학교	통일교육연구학교반	2	53	원	옴니버스 특강 통일·북한 강좌	86	4,857
통일	초등교장(감)	6	377	외	원내교수 등 출강교육	547 335	11,132
교육	초등교사(기본)	3	116	피	전대교구 등 물성교육 캠프 등 체험학습	135	19,411 14,701
과정 (교원) - -	초등교사(심화)	1	43	바	해외전문가 초빙교수	3	1,080
	초등(유치원교사)	2	84		통일관 체험프로그램	15	49,832
	예비교사반	4	133		지역통일교육센터		247,062
	교육전문직위반	1	38		통일교육협의회 원외교육 총계	293 4 260	44,851 442,742
	소 계	29	1,357		총계	-	557,096

Ι

 \prod

 \coprod

IV

② 교육훈련기관별 통일교육* 통계(원내 교육 : 현장학습 + 원내 강의)

(단위 : 시간/명)

7 8	^ 고 오 호러기 괴	현장	학습	원내 강의		
구분	소속	교육훈련기관	시간	인원	시간	인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965	6,203	2,152	6,203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46	838	104	1,129
	경찰청	경찰대학	_	_	66	158
	산림청	산림교육원	1	25	21	25
국가	법무부	법무연수원	103	1336	18	701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8	26	15	26
	국방부	국방대학교	32	210	7	210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_	6	122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5	59	3	20
	병무청	병무연수원	7	37	4	76
	대구광역시	대구시공무원교육원	14	54	23	15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_	_	6	47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_	_	3	94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_	_	16	408
	경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_	_	154	176
지자체	충청북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28	59	37	934
	충청남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_	_	14	750
	전라남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_	_	3	1,683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_	_	42	46
	경상남도	경남인재개발원	28	87	24	1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2	376	12	4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연수원	30	48	4	48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25	255	8	51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연수원	13	76	2	76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연수원	8	35	54	1,367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20	107	-	_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수원	_	_	1	645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연수원	16	60	50	120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연수원	_	_	15	35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30	78	8	364
	정유교시쳐지랄루종마	세종교육연구원	28	139	21	192

^{*} 사이버강의 및 원외 교육 제외

2

2019년 통일교육 예산

□ 통일교육원 주요사업비 예산

구분	사업명	예산(백만원)
	통일교육활성화지원	587
	통일준비전문인력양성	836
	통일미래맞춤형교육운영	2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국제협력을통한통일교육추진	178
및 운영	통일교육자료개발보급	1,961
	통일교육자료센터 운영	76
	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프로그램	77
	Й	3,919
	초중고학교통일교육지원	1,426
학교 통일교육 강화	대학통일교육활성화	3,397
 対파 유틸파보 영창	참여·체험형프로그램	1,935
	Я	6,758
	사회통일교육거버넌스구축	2,556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오두산통일전망대운영및통일관지원	2,549
사외충일교육 내결와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200
	Я	5,305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	575
	청사관리운영	1,235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시설개보수(시설비 등)	55
	Я	1,290
	17,847	

^{*} 인건비, 기본경비 제외

Ι

 \prod

 \prod

IV

7

3 등일교육 법령

법

통일교육 지원법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 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 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혐의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Τ

П

Ш

IV

- V
- VI

-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 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 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 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통일교육의 실시
 -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시행령

통일교육 지워법 시행령

(2018.9.11. 일부개정, 2018.9.14.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기념행사
-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 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П

 \blacksquare

IV

V

-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 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 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 Ι
- \prod
- \blacksquare

IV

V

- 1.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장비를 보유할 것
- 2. 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 3. 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 4.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장비 개요서
 -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 ③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④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지침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Ι

П

ш

IV

V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 5. 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 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 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등 통일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일교육부터 적용한다.

③ 조례

구분	기관명	조례명	제·개정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2017. 1. 5.
	경기도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0. 1.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9.30.
	전라남도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 3.
지자체	충청남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2.31.
(11)	경상북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27.
	강원도	강원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2016.12.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8.12.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2015.12.1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13.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1. 4.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9.30.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 3.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 2. 8.
교육청 (9)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2018.11. 9.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 6. 8.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1. 4.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12.2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 5.16.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